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24호 2017. 10. 12.(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7-179호 축동 용산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고시 ----- 2
- 사천시 고시 제2017-18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5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7-1069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6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7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524호(2)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7 - 179호

축동 용산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174번지 일원 「축동 용산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축동 용산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499백만원

사 천 시 공 보

제524호(3)

4. 주요 사업내용

사업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비고
합 계			499	
기 초 생 활 기 반 확 충			32	
	공동생활홈	리모델링 1식	32	
지 역 경 관 개 선			387	
	용산 도라지꽃 길 조성	L=230m	35	
	도라지꽃 연못공원 조성	A=1,419㎡	258	
	도라지꽃 테마 경관 조성	조명 설치 1식	29	
	도라지꽃 광장 조성	A=332㎡	65	
지 역 역 량 강 화			60	
	교육	1식	20	
	홍보	1식	17	
	전문컨설팅	1식	13	
	경영지원	1식	10	
부 대 비 용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20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지역개발과장)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2018년(2년간)

사 천 시 공 보

제524호(4)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도라지꽃 광장 조성												
1	축동	가산	174	대	866	260	국	건설부				
2	축동	가산	172	도	327	22	국	건설부				
3	축동	가산	171-1	잡	278	50	국	건설부				
2) 도라지꽃 연못공원 조성												
1	축동	가산	221-2	답	393	227	국	건설부				
2	축동	가산	221-1	답	1,706	1,192	국	건설부				

8. 관계 도서는 사천시청 지역개발과(055-831-3241)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24호(5)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7 - 18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 10. 10.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7 - 8호
2. 점용·사용 승인 연월일 : 2017년 10월 10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어선의 안전한 접안에 필요한 PE부잔교 및 연결도교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4-7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의 면적 : 600㎡(직접 124.4, 간접 475.6)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7. 10. 10. ~ 2032. 10. 09.(15년)
7.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시 공 보

제524호(6)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7 - 1069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 10. 11.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10. 11. ~ 2017. 10. 26. (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62러7553	제네시스	공*경	2017. 9. 28	소유자요청(불명자 운행)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524호(7)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055-831-3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